

AI 나눔이로

스마트하게,

학폭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생성형 AI 솔루션, 나눔이로
 학폭 유형별 맞춤 사례 및 사안처리 정보를 제공해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왜 'AI 나눔이'가 필요할까요?

“**학급 생활 지도하기도 바쁜데, 학폭 업무까지 가중되니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요.**”

- 서울 00초등학교 교사 박**

'AI 나눔이'와 함께 한다면,

학폭 사전 예방 학폭 예방교육 및 교육자료 활용	빠른 사안 처리 절차지연 해소 및 행정부담 경감
원만한 갈등 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지원	복잡한 사안 해결 학폭 사안조사 효율성 향상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꺼져, 시발’이라고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 판례, 행정심판례, Q&A**’ 정보 속에서 적합한 근거를 찾아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학폭 사례 학습을 통한 정확한 답변

학폭 사안과 관련성 있는 법령, 판례, 행정심판례, Q&A 사례 등 추천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근거 자료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사용자 질문 의도에 따른 맞춤형 추천 질문 생성

사용자 질의 의도에 따른 맞춤형 답변과 추천 질문을 제공하여 AI와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근거 문서를 AI 분석 및 정리하여 보고서 등으로 활용

법률, 판례, 교육청 발간 업무매뉴얼 등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학폭 관련 데이터를 AI가 분석 및 정리하여 학생교육용, 업무보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률, 판례 및 신뢰성 높은 자료 무제한 열람

학교폭력 관련 법률, 판례, 행정심판례, 교육청 발간 업무매뉴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웹 뷰어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지체없이 묻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꺼져, 시발'이라고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례-2022구합13565에 따르면, 특정한 언어적 폭력이나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꺼져, 시발”과 같은 욕설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언어적 폭력도 포함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꺼져 시발”과 같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욕설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언어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동 경로: 메인화면 > GPT 질문

근거 법률을 쉽게 확인하는건 물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청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9.8.20, 2021.3.23, 2023.10.24>

1. 피해학생에 대한 시정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벌칙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견문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벌칙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2019.8.20, 2021.3.23, 2023.10.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간(단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 행정심판례도 볼 수 있고,

판례-2022구합0000

판례-2022구합13565에 대해 GPT에게 물어보세요.

문서 정보 요약본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제2형정부에서 다른 사건으로, 원고들이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이유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 등을 판결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여수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의 경위: 피해학생 P는 원고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원고들 역시 P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원고들과 P 모두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절차적 하자: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원고들이 어떤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이는 행정청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P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원고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람의 판단: 절차적 하자 인정: 처분서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원고들이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었고, 이는 행정청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분의 이유 제시가 불충분할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원고들이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과 피해학생 P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청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문서를 요약,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정 부

판 결

사 건 원 고

2022구합 0000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무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무 F
3.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H, 무 I
4. J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K, 무 L
5. M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N, 무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데이터 보안 및 관리**

학교폭력이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고객 DB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며, 사용자 개인정보와 검색 이력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이동 경로: 메인화면 > 문서정보 탭 > 판례 선택

AI 나눔이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AI 나눔이를 체험해 보세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 많은 학교들과 AI 나눔이가 함께합니다!

화진초등학교	녹수초등학교	이매초등학교
서울대곡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새솔초등학교
양진중학교	문정중학교	수성중학교
중동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4, 5층
 Tel: 02-6284-0195 / Fax: 02-6284-0196
 E-mail: admin@intellicon.co.kr